



(갑자)

※ 처리기간 : 3일

## 수입신고필증

① 신고번호 41364-25-302069M	② 신고일 2025/06/19	③ 세관과 020-C2	⑥ 입항일 2025/06/19	⑦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
④ B/L(AWB)번호 LSHINC25061130QM	⑤ 화물관리번호 25PCSLF018I-6052-0017		⑧ 반입일	⑨ 징수형태 11
⑩ 신고인 관세법인충정 구현서		⑯ 통관계획 C 보세구역도착전	⑯ 원산지증명서 유무 N	② 총중량 1,200 KG
⑪ 수입자 (주)후지글로벌코리아(후지글로-1-21-1-01-8 A)		⑯ 신고구분 A 일반P/L신고[사후제출]	⑯ 가격신고서 유무 Y	② 총포장갯수 2 GT
⑫ 납세의무자 (주)후지글로벌코리아 (주소)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375 103동 702호(고덕동고덕동경재아이파크) 102동 3901호 (05200) (상호) (주)후지글로벌코리아 (성명) 최수정		⑰ 거래구분 11 일반형태수입	⑰ 국내도착항 KRINC 인천항	② 운송형태 10-LC
⑬ 운송주선인 (주)제이콘솔라인(JICON)		⑰ 종류 21 일반수입(내수용)	⑰ 적출국 CN PRC	⑰ 선기명 PEGASUS GLORY LR
⑭ 무역거래처 SUZHOU FUJI ECO COMMERCIAL AND TRADING CO (CN) / CNNINGBO0536S		⑰ MASTER B/L번호 KMTC-SHAO123546	⑰ 운수기관부호	
⑮ 검사(반입)장소 02010033-25(인천항공동물류보세창고)				
● 품명·규격 (란번호/총란수 : 001/001 )				
⑯ 품명 PARTS FOR LIFT	⑯ 상표 NO			
⑯ 거래품명 ELEVATOR TRACTION MACHINE BRAKE PARTS				
⑯ 모델·규격 (NO. 01) ELEVATOR PARTS(SHOCK PAD DA505)	⑯ 성분	⑯ 수량 2,000 SET	⑯ 단가(CNY)	⑯ 금액(CNY) 24,000
⑯ 세번부호 8431.31-0000	⑯ 순중량 1,160 KG	⑯ C/S검사 S 생략	⑯ 사후확인기관	
⑯ 과세가격(IF) \$ 3,407 ₩ 4,640,540	⑯ 수량 0 2,000 ST	⑯ 검사변경 ⑯ 원산지 CN-A-B-G	⑯ 특수세액 0.00	
⑯ 수입요건확인 (발급서류명)				
⑯ 세종 관 부	⑯ 세율(구분) 0.00 (C가가) 10.00 (A)	⑯ 감면율 0.00	⑯ 세액 0 464,054	⑯ 감면분납부호 감면액 0 0
⑯ 결제금액(인도조건-통화종류-금액-결제방법)		CIF-CNY-24,000-TT		⑯ 환율 189.4600
⑯ 총과세가격 \$ 3,407 ₩ 4,640,540	⑯ 운임 0 ⑯ 보험료 0	⑯ 가산금액 93,500 0	⑯ 납부번호 020-11-25-02759787 ⑯ 부가가치세과표 4,640,540	
⑯ 세종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·자원경제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신고지연가산세 미신고가산세	⑯ 세액 0 0 0 0 0 464,050 0 0 0	※신고인기재란 완제품세번 8428.39-0000입태 = 도매종 목 = 엘리베이트 및 부품달러환율 = 1,433.3000	⑯ 세관기재란 -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, 낱개·산물·분할 등 재포장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(재양도 포함)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 -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. 20.7.1일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에 대해 세관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,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unipass.customs.go.kr)	
⑯ 총세액계 464,050	⑯ 담당자 000000	⑯ 접수일시 2025/06/20	⑯ 수리일자 2025/06/20	

발행번호 : 2025175158125(2025.06.20)

세관과 : 020-C2 신고번호 : 41364-25-302069M

Page : 1/1

\* 본 신고필증은 발행 후 세관심사 등에 따라 정정·수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발행번호 등을 이용하여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

(http://unipass.customs.g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\* 본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.

\* 본 신고필증은 전자문서(PDF파일)로 발급된 신고필증입니다.

\* 출력된 신고필증의 진본여부 확인은 전자문서의 '시점확인필' 스템프로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